

2025년도 글로벌 정보보호 고급 인력 양성과제

- 박사후연구원, 석·박사과정 해외 파견생 모집 -

사이버보안 해외 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별 협력, 인력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기술·인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파견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04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보호학회

I 지원 사항

□ 지원 개요

-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상위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박사후연구원 및 석·박사 대학원생 파견을 지원하여 연구 역량 증진, 해외 네트워킹 지원

□ 지원 내용

- (연구분야) 사이버보안
- (파견대상기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사이버보안 분야 해외 우수기관
- (선발인원) 2025년 2차 박사후연구원 00명, 석·박사과정 재학생 파견 00명
선발 예정(총 30명 이내)
- (신청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5월 16일(금) 15:00까지
※ 연차별 지원기간 및 금액, 선정인원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박사후연구원 최대 8,000만원 이내 / 1년 (+1년 추가지원 가능)
석·박사과정 최대 4,000만원 이내 / 6개월
* 인건비, 항공료, 체재비 등 파견 지역에 따라 산정 후 일괄 지급

II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분	세부 내용
박사후 연구원	- 국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1985.4.1. 이후 출생)인 자 -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 (단,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확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 인정)
석·박사 과정	- 신청일 기준 국내 대학 석·박사학위 과정 재학생(파견기간 동안 원 소속기관 유지 필수) *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후 재심이가 필요

□ 지원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사업, (교육부)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기타 민간단체 해외연수지원사업 기수행자 및 수행 중인자는 지원 불가
- (최종 선정 필수 조건) 최종 선정자는 본 과제 참여율 100%로 참여
※ 타 과제 참여율 계상 불가(본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 필수)
- 최종 선정자는 출국 확정일 기준 월* 이전에 참여 중인 타 과제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함
※ (예시) 출국일이 6월 20일이면 6월 1일

III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파견 지원비	박사후 연구원 - 파견기간 : 1년 (심사를 거쳐 1+1 가능) - 최대 8,000만원 이내 ※ 인건비 : 350만원*12개월=4,200만원
	박사 과정 - 파견기간 : 6개월 - 최대 3,900만원 이내 ※ 인건비 : 300만원*6개월=1,800만원
	석사 과정 - 파견기간 : 6개월 - 최대 3,400만원 이내 ※ 인건비 : 220만원*6개월=1,320만원
기타사항	★ 해당 과제 참여율 100% 필수 ★ 체재비, 항공료, 비자/보험 등 파견 지역에 따라 산정 후 일괄 지급

* 파견지원비 세부사항은 환율 등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IV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우수인력 파견을 위한 연구자 역량, 연수기관의 적절성, 연수내용, 연구계획 등 평가항목에 대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
 - * 서면평가(80점) + 면접평가(20점) 점수 합계(100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 결격사유, 연수불가 등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지원
- 지원자 제출서류 및 적합성 검토
 - 국내 타 사업 또는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중복수혜 불가
 - * 과기정통부 세종과학펠로우십, 교육부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과기정통부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사업, 기타 민간단체 해외연수지원사업 등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절차	내용	비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	
서면평가 (80점)	• 연구자 역량 (25) • 연수기관(지도교수)의 적절성 및 우수성 (20) • 연수의 필요성 및 목표의 타당성 (15) • 연수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 기대효과 및 국내 복귀 계획의 적절성 (5)	지원자 전체 대상 평가위원 점수 합계 1.5배수 선발
면접평가 (20점)	• 서면평가 합격자 대상 면접평가 진행 • 서면+면접평가 점수 합계 순으로 지원 순위 선정 - 인성 (5) - 발전가능성 (10) - 기타(5)	결격사유, 연수불가 등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지원

* CS, QS, Edurank 등 글로벌 우수기관으로 파견 시 가점 부여

V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04.14.(월) ~ 2025.05.16.(금) 15:00까지
- (선정평가) 2025.05.19.(월) ~ 2025.05.25.(일)
- (결과통보) 2025.05.30.(금) 예정
 - * 상기 모든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 등록 및 연구개시) 출국 확정일 기준 20일 이내 본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 선정 후 2025년 12월 내 출국
- (신청방법) E-mail 제출 : kiisc.iitp@gmail.com (2025.05.16.(금) 15:00까지)
 -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등록 불가
- (문의처) 글로벌 정보보호 고급 인력 양성과제 담당자
T. 031-219-3869 / E-Mail. kiisc.iitp@gmail.com

□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항목	세부 내용
<p>[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별첨 1</p>	<p>▷ (작성분량) 5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작성 내용 1) 연수기관의 우수성 (글로벌 랭킹 등 근거자료 제시) 2) 연수기관 지도교수의 우수성 (우수저널, 우수학회 논문 게재 실적 등 피인용지수, IF 등 근거자료 제시)</p>
<p>[2] 연구실적 ※ 별첨 2</p>	<p>▷ 신청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p>
<p>[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첨 3</p>	
<p>[4] 연수기관 추천서(확인서) ※ 별첨 4</p>	<p>▷ 연수기관 지도교수의 추천서(확인서) ▷ (박사후연구원) - 해외파견 기관 채용확약서 또는 조건부 채용확약서 ▷ (석·박사 과정생 6개월 파견형) - 기술연수, 인턴십, 공동연구 등 해외 파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약서</p>
<p>[5] 국내 대학 지도교수 추천서(확인서) ※ 별첨 5</p>	<p>▷ 지원자 소속 국내 대학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확인서</p>
<p>[6] 박사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해당자만) ※ 별첨 6</p>	<p>▷ 박사학위 취득 예정(~2025. 8. 28.)인 경우에만 제출</p>
<p>[7] 귀국 의무조건 확약서 ※ 별첨 7</p>	<p>▷ 연수 종료 후 귀국 의무 이행 확약서</p>

* 별첨의 양식 참고(파견기관 확약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실수로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마감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 단,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반영하여 실적 작성 가능
 -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 첨부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실시

VI 신청 제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서 마감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 제한 조건
 - **연구개시일(출국일) 기준**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 등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외 사항

- 수행 중 또는 참여중인 과제가 **출국일 기준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VII 유의 사항

□ 파견 준비

준비사항	내 용
항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파견기관 지역 편도 항공권 구매 - 편도 항공권 실비 지원 후 귀국 일정 확정 시 추후 귀국 항공권 실비 지원 예정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국가에 따라 실비 지원 예정 - 비자 발급 이슈에 따라 기간 내 출국을 위한 빠른 진행 권고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국가에 따라 실비 지원 예정(상한액(100만원) 초과 불가)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자 개별 진행 후 인건비, 체재비 등 파견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산정 후 일괄 지급 예정

- 비자 인터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 제출 필수

□ **파견 중**

- 연구중단, 연수포기 관련 사항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중단 및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을 해야하며, 아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①를 적용하여 주관기관(학회)이 구성한 제재처분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②
 -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불가
 - * 불성실 중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5년 해외파견형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수중단 및 연수포기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주관기관(학회)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연수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수 수행이 제한된 경우 ※ 연수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공직 등 임명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연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및 타 사업 선정의 경우 예외 없이 인정하지 않음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신분변동은 대상 기관이 국내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②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

- 연구계획서에 작성된 국외연수/파견기관에서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 과제 중단, 지원비 환수
 -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심의 요청 필수
-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후연구원 1년, 석/박사 단기 파견 6개월 기간 변경 불가
 - * 기한 내 연구개시가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
- 파견 기간 중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천재지변,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귀국허용일수 연간 최대 15일(박사후연구원 기준, 6개월 파견의 경우 최대 7일) 이내로 허용
 - *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일체 비용 사업비 집행 불가하며, 귀국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사유 불문 초과 날짜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
 - * 연수기간 중 국내 일시 귀국 필요 시, 사전 심의 요청 필수
- 기타 운영 상 특이 사항 등 발생 시 심의 요청 결과를 반영

□ **파견 중/종료 후 파견자 연구성과 관리**

- 파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5년간 성과조사 등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IITP)의 자료 제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파견 종료 후 다음의 성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달성 시 사업비 전액 반납
 - **(중간진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파견 기간 중/ 종료 후 진행 상황 공유 및 결과 제출을 위한 보고서 제출
 - **(논문 게재)** 해외 지도교수(또는 부서담당자) 공동저자 참여 필수, 본 사업 단독사사 표기만 가능
 - * 해외 연구기관 참여과제 사사표기 병행 가능¹⁾

구분	선정자 성과 관리 내용
박사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 변경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중 변경 가능-사전 승인 필수 • 연수 기간 중 1편 이상 논문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게재 완료 필수 • 논문 등급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Q1급 이상 저널 또는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석·박사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종료 후 2개월 이내 1편 이상 논문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 게재 완료 필수 • 논문 등급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Q2급 이상 저널 또는 우수국제학술대회 발표

1) 단, 해외 연구기관 참여과제 외 국내 과제의 중복사사일 경우 본 사업 요구 실적에 대한 기여도 총합¹ 충족해야 함

2) 논문등급 세부 기준은 CS분야 JCR 랭킹 및 연구재단 BK21 우수국제학술 대회 목록, 한국정보과학회 제정 우수학술대회 목록 등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 및 성과관리 위원회에서 결정

별첨. 컴퓨터 과학·정보·보안 분야 우수 연구기관(예) - 참고용

* 해당 랭킹은 대학 순위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해외 우수 연구소, 공공기관 파견 가능

CS 랭킹(컴퓨터보안)	QS 랭킹(컴퓨터과학·정보)	Edurank(사이버보안)
CISPA (독일)	MIT (미국)	UC 버클리 (미국)
조지아텍 (미국)	임페리얼칼리지 (영국)	스탠포드대 (미국)
퍼듀대 (미국)	옥스퍼드대 (영국)	MIT (미국)
ETH 취리히 (스위스)	하버드대 (미국)	카네기 멜론대 (미국)
UIUC (미국)	캠브리지대 (영국)	캠브리지대 (영국)
카네기 멜론대 (미국)	스탠포드대 (미국)	조지아텍 (미국)
노스이스턴대 (미국)	ETH 취리히 (스위스)	메릴랜드대 (미국)
메릴랜드대 (미국)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UIUC (미국)
인디애나대 (미국)	UCL (영국)	미시간대 (미국)
코넬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 (미국)	토론토대 (캐나다)
다름슈타트 공과대 (독일)	펜실베니아대 (미국)	코넬대 (미국)
미시간대 (미국)	UC 버클리 (미국)	워싱턴대 (미국)
UC 샌디에이고 (미국)	멜버른대 (호주)	하버드대 (미국)
워털루대(캐나다)	난양기술대 (싱가포르)	UCLA (미국)
UC 버클리 (미국)	코넬대 (미국)	프린스턴대 (미국)
듀크대 (미국)	시드니대 (호주)	컬럼비아대 (미국)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뉴사우스웨이스대 (호주)	텍사스대 (미국)
보훔 루르트대 (독일)	시카고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국)
UC 리버사이드 (미국)	시카고대 (미국)	UC 샌디에이고 (미국)
UC 산타바바라 (미국)	예일대 (미국)	옥스퍼드대 (영국)
위스콘신대(미국)	토론토대 (캐나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미국)
EPFL (스위스)	EPFL (스위스)	워털루대 (캐나다)
KU 루벤 (벨기에)	에든버러대 (영국)	UCL (영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국)	뮌헨 공과대 (독일)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시카고대 (미국)	맥길대 (캐나다)	뉴욕대 (미국)
막스플랑크 연구소 (독일)	호주국립대 (호주)	KU 루벤 (벨기에)
뉴욕대 (미국)	서울국립대 (한국)	난양기술대 (싱가포르)
조지 메이슨대 (미국)	존스 홉킨스대 (미국)	ETH 취리히 (스위스)
워싱턴대 (미국)	도쿄대 (일본)	멜버른대 (호주)
VU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컬럼비아대 (미국)	EPFL (스위스)
캘리포니아대어바인(미국)	맨체스터대 (영국)	홍콩대 (홍콩)
KAIST (한국)	홍콩대 (홍콩)	미시간 주립대 (미국)
존스 홉킨스대 (미국)	모나시대 (호주)	펜실베니아대 (미국)
프린스턴대 (미국)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캐나다)	위스콘신대 (미국)
컬럼비아대 (미국)	킹스칼리지런던 (영국)	UC 산타바바라 (미국)
플로리다대 (미국)	퀸즈랜드대 (호주)	미네소타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미국)	퍼듀대 (미국)
노스웨스턴대 (미국)	뉴욕대 (미국)	플로리다대 (미국)

파더본대 (독일)	미시간대 (미국)	UBC (캐나다)
보스턴대 (미국)	파리공과대 (프랑스)	오하이오 주립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미국)	홍콩과기대 (홍콩)	임페리얼 칼리지 (영국)
매사추세츠대 (미국)	델프트 공과대 (네덜란드)	예일대 (미국)
예일대 (미국)	교토대 (일본)	럿거스대 (미국)
버지니아테크(미국)	노스웨스턴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미국)
조지타운대 (미국)	런던경기경제대 (영국)	존스 홉킨스대 (미국)
그라츠 공과대 (오스트리아)	KAIST (한국)	뉴사우스웨일스대 (호주)
일리노이대(미국)	브리스틀대 (영국)	애리조나 주립대 (미국)
스탠포드대(미국)	암스테르담대 (네덜란드)	조지 메이슨대 (미국)
에든버러대(영국)	연세대 (한국)	UC 데이비스 (미국)
버지니아대(미국)	홍콩이공대학 (홍콩)	텍사스 A&M대 (미국)